## (4) 기술자료 임치제도

## □ 사업개요

-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,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(법적추정력)하는 제도
  - \* 관련근거 :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
  - \*\* 지정 임치기관: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, 기술보증기금

## □ 이용대상

- (대상)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, 기관, 단체 또는 사업자
- (임치 대상물)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·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

기술상 정보	경영상 정보
· 생산·제조 방법, 시설·제품설계도 등 · 물질 배합 비율·성분표	·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(재무, 회계, 인사, 마케팅, 노무, 생산)
·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	·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
· SW 소스코드·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	(원가, 거래처,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)

## □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연중 상시
- (신청방법)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

신청방법	신청주소	
온라인	· 기술자료임치센터(www.kescrow.or.kr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) · 기술보호종합포털(ts.kibo.or.kr, 기술보증기금)	
오프라인	<ul> <li>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서울 충무로 소재) 직접 방문</li> <li>*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</li> <li>·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(대전) 직접 방문</li> <li>*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,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</li> </ul>	

○ (이용절차)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

○ (임치 수수료)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

구분	대·중소기업· 농어업협력재단	기술보증기금 (VAT 포함)	비고
신규	300,000원/년	330,000원/년	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, 창업·벤처기업, 기술 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/3 감면(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) ■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/2 감면 *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
갱신	150,000원/년	165,000원/년	
편입	50,000원/년	55,000원/년	■ 양자간 임치계약 <sup>*</sup> 에 사용인으로 편입 * 개발기업과 임치기관간 계약
추가	50,000원/건	55,000원/건	■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

<sup>\*</sup>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,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(1년이내) 가능(창업기업 무료, 벤처기업 5만원)